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안미자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2024. 2. 20.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안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정의(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정의함.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 (지원범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시에는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본 제정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가. 제정의 취지(적정성/타당성)

- 본 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2019년 3월 28일 제정)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

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소요예산 산출근거

- 2023년도 교통카드 미보상 대기자수(300명)외 교통카드 추가 제작시 31,500천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함.
- 2019~2023년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마포구 처리 기준)**

(단위:명, **2020부터 70세이상 지급건수, 2,504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청건수 (a+b)	2019년도에는 서울시내 4개 면허시험장, 31개 경찰서에 서 신청받아 직접 처리 : 총 7,500장 배부(서울시 전체)	681	352	538	1,051
교통카드 지급건수(a)		681	352	538	933
교통카드 미지급건수(b) (대기현황)		0	0	0	118 ¹⁾

1) 6개동(공덕, 신수, 서강, 망원2, 성산1, 상암) : 2024년 지급 예정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 서울시 16개 자치구 제정 시행 중 자체 예산 편성 자치구는 5개 임.(강서, 양천, 도봉, 동작, 영등포구)

라.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내용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안 제2조에는 정의에 관한 내용임.
 -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임.

- (지원범위)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지원대상)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시에는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지자체마다 어르신 운전자들의 면허를 가진 반납받는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운전자의 사고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한번의 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체 교통사고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 자료 참조)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2019년 3월 28일 제정)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의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을 먼저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고령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등 안전교육 이수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도 해당부서에서는 고민하여 교통사고 없는 마포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비용발생 요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충전 교통카드 제작
- (2)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카드 제작비 : 105천원/장(충전금액 인당 100천원+카드 디자인비 장당 약5천원)
- (2) 예상 추가 소요 카드 수

(단위 : 장)

연도	카드 제작 수량	비고
1차년도(2024)	300	2023년 미보상 대기자수 “118명”+a
2차년도(2025)	100	미보상 대기자 수 추정하여 수량 책정
3차년도(2026)	100	
4차년도(2027)	100	
5차년도(2028)	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충전 교통카드 제작비용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소계(b)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 총 비용(a-b)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기타(구비)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합계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5. 덧붙이는 의견 : 교통카드 제작 수량은 교통카드 미수령자 수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김혜지
연락처	02-3153-96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5차년도 카드 제작수량 추정치

(단위:명)

구 분	2023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신청건수 (a+b)	1,051	1,000	1,100	1,100	1,100	1,100
교통카드 지급건수(a)	933	7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카드 미지급건수(b) =카드 제작수량	118 ¹⁾	300	100	100	100	100

1) 6개동 교통카드 미지급 건수 118명 (2024년 지급 예정)

- 공덕동 42명, 신수동 35명, 서강동 28명, 망원2동 4명, 성산1동 4명, 상암동 5명

[별표 1]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교통안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